교수 연구년 규정

■ 제 정 : 2004. 6. 1 ■ 개 정 : 2024. 3. 1 ■ 관리부서 : 교 무 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 연구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연구년이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가진 교수가 대학의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연구에만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연구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본교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임용된 후 근속 기간이 6년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② 휴직 등으로 본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연구년을 위한 재직연수산정시 재직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2차 이상의 연구년의 부여는 전회 연구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전 근속기간이 최소한 6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 ④ 연구년은 재직기간 중 총 2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총장의 요청에 의한 6월 이하의 연구년을 종료한 교원은 4년 이내에 6월 이하의 연구년을 재차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제한) ① 연구년 중인 교원의 수는 전임교원 총수의 15분의 1이내로 제한하고, 휴직등 학교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교원을 포함할 경우는 전임교원 총수의 10분의 1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학부의 전임교원이 5인 미만인 경우 한학기의 연구년이 겹치는 경우에 연구년을 허가하지 않는다.
 - ② 연구년 중인 교수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연구년 인원은 교무위원회의 심의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년 신청을 제한한다.
 - 1. 휴직, 징계, 직위해제 중인 교원
 - 2.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
 - 3. 연구년교원으로 선발된 후 연구년을 포기한 경우로서 당초 연구년 개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

제5조(기간) 제3조의 1항의 조건을 갖춘 교원에게는 1년 이내의 연구년을 부여한다.

- **제6조(절차)** ①연구년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교원이 연구년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소 정의 신청서 (별표 1-1) 및 연구계획서(별표 1-2)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계획서는 대학발전이나 학부전공학문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신청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3조, 제4조에 규정한 자격과 인원에 따라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총장의 제청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년 부여시기 3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연구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연구년 대 상자를 선정한다.
 - 1. 재직연수가 높은 자(2차의 경우 전회 연구년이 종료된 후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을 0.8로 산정함.)
 - 2.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 이용회수가 적은 자

- 3. 연구년 누적 수행 기간이 적은 자
- 4. 최근 3년간 교수 업적평가 점수 중 연구점수가 높은 자(단, 교무위원 보직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함)
- ⑤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1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연구년 복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 ① 연구년 중인 교수는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 ② 연구년 중인 교수의 보수는 특별수당을 제외한 급여 전액으로 한다.
- ③ 연구년은 근속연수에 산입이 되며, 연구년 기간 중에도 승호봉 및 승진은 정상적으로 행한다.
- ④ 연구년 중인 교원에게 학교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연구년이 종료된 교수는 즉시 복귀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표 3)

- ② 연구년 중인 교수는 본교에 제출한 연구계획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른 정규 직업을 가질수 없다.
- ③ 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별표 2)을 총장에게 제출한다.
- ④ 연구실적물은 연구년 종료 후 1년 이내에 논문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고 저서는 출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체능계 실기의 연구결과 발표는 개인발표회,단독음반출반,오페라 혹은 뮤지컬 주연(초연) 또는 연출, 기획 제작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기 기간을 지키지 못할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다.
- ⑤ 연구년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귀하지 않거나 상기의무를 이행치 않는 교원에게는 연구년 기간 중 받은 보수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차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교원인사규정 제6장 연구출장에 의하여 연구출장중인 교원에 게는 제8조 3,4,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실시한 연구출장 교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